

천안 - 논산간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

2000. 12. 14.

건설교통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1
제 2 조	정의	-----	1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	7
제 4 조	무상사용기간	-----	7
제 5 조	사업시설의 귀속	-----	8
제 6 조	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	8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	8

제 3 장 실 시 절 차

제 8 조	협약의 효력	-----	9
제 9 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	9
제 10 조	행정절차 추진	-----	9

제 4 장 사 업 비

제 11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	10
제 12 조	총사업비의 변경	-----	10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3 조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11
제 14 조	위험물	12
제 15 조	지상 및 지하지장물	12
제 16 조	보상업무등	12
제 17 조	공사비	12
제 18 조	공사기간	13
제 19 조	공사의 착수	13
제 20 조	공정관리	13
제 21 조	사업이행보증금	14
제 22 조	이행지체	14
제 23 조	공사의 도급	14
제 24 조	기성검사	15
제 25 조	민원처리	15
제 26 조	안전관리	15
제 27 조	권한의 위임	15
제 28 조	공사책임감리	16
제 29 조	부속시설사업	16
제 30 조	부대사업	16
제 31 조	부분준공	17
제 32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17
제 33 조	준공검사	17

제 6 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4 조	운영개시일	18
제 35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 확보	18
제 36 조	시설투자 완료기한	19
제 37 조	교통관리체계의 운영	19
제 38 조	이용차량 자료등의 제출 및 확인	19
제 39 조	운영비용	20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 40 조	사업수익률	20
제 41 조	통행료의 징수	21
제 42 조	통행료	21
제 43 조	최초통행료	21
제 44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22
제 45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22
제 46 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23
제 47 조	초과환차손익의 처리	24

제 8 장 위험의 배분

제 48 조	위험배분의 원칙	24
제 4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5
제 50 조	정부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25
제 51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26

제 9 장 정부지원사항

제 52 조	총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28
제 53 조	제정지원	28
제 54 조	정부의 비재정적 지원	29
제 55 조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30

제 10 장 불가항력

제 56 조	불가항력사유	30
제 57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30
제 58 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31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5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31
제 60 조	협약의 중도해지	32
제 61 조	매수청구권	33
제 62 조	해지시 지급금	33
제 63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34
제 64 조	협약중도 해지시의 효과	36
제 65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36

제 12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66 조	양도	37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37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68 조	분쟁의 해결	38
제 69 조	분쟁금액	38
제 70 조	판정위원회	38
제 71 조	중재	40
제 72 조	합의관할	41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73 조	해석	41
제 74 조	문서의 우선순위	41
제 75 조	자금차입 비용의 부담	42
제 76 조	기타 정미한 수익성사업	43
제 77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43
제 78 조	협약의 변경	43
제 79 조	권리의부의 양도	44
제 80 조	협약의 수익자	44
제 81 조	정부의 협약준수의무	44

제 82 조	일부무효	44
제 83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44
제 84 조	비밀유지	45
제 85 조	서면통지	45
제 86 조	언어	46
제 87 조	준거법	46

부 록

1.	출자자 및 지분을	48
2.	총사업비	49
3.	총민간사업비	50
4.	국고보조금 지급일정	51
5.	차종별통행료	52
6.	추정 통행료수입	54
7.	운영비용	55
8.	통행료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56
9.	자금투입계획	57
10.	수정 사업계획서	58
11.	사무모델(디스켓 1매)	59



실시협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유치촉진법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와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간에 1997년 4월 3일 체결한 실시협약을 1998년 12월 31일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1999년 3월 31일 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및 1999년 7월 9일 고시된 '99.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0년 12월 14일 다음과 같이 개정 협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본 협약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중평균상환환율 : 사업시행자가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매년도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각 상환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당해 연도 총 외화차입원리금 상환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2. 가중평균차입환율 : 사업시행자가 건설기간 중에 조달하는 건설자금용(운영자금 제외) 외화차입금의 각 외화차입 당시의 각 외화에 대한 원화공식환율을 곱하여 합산한 원화액을 총외화차입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환율을 말한다.
3. 관리자 : '95. 12. 30.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 3.4.2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지정하여 계약체결한 감

리전문회사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4호 건설기술관리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 : 대한민국 법률 제6112호 건설산업기본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 공사기간 :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도로 전체구간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7. 공사도급계약 : 사업시행자와 시공자들간에 체결되는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위한 계약을 말한다.
8. 공사비 :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한 도로공사비 및 부대시설공사비를 의미한다.
9. 공사착수일 : 실시계획승인 후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공사에 착수한 날을 말한다.
10. 공적환율 : 당해 일에 금융결제원이 고시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한다.
11. 과도한 환자손 : 매 외화차입원리금 상환연도의 가중평균상환환율이 가중평균차입환율보다 20%를 초과하여 상승하는 경우, 그 초과 상승분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당해연도의 순외환손실액을 말한다.
12. 과도한 환차익 : 매 외화차입원리금 상환연도의 가중평균상환환율이 가중평균차입환율보다 20%를 초과하여 하락하는 경우, 그 초과 하락분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한 당해연도 상환된 외화차입원리금에 대한 순외환이익액을 말한다.
13.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민간투자사업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14. 교통량 : 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연차별 총량을 의미한다.
15. 국가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16. 리고보조금 : 정부가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금융완결 :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한 차입금 인출의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 또는 면제되어 차입금이 인출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18. 기타 수입 : 사업시행자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운영기간 동안 본 도로시설을 이용한 기타 경미한 수익성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19. 담보권 : 지당권, 유치권, 질권, 기나 담보권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 효과권을 가지는 약정 또는 협정을 말한다.
20. 대리은행 : 대주단이 대리은행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1.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들)상의 당사자가 되는 국내외의 금융기관(들) 또는 연기금(들)을 말한다.
22. 대체사업자 : 제67조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23. 도로 공사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가운데 부대시설공사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4. 무상사용기간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5.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제6021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은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6220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을 포함한다.
2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기획예산처가 민간투자법 제7조에 의하여 고시하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의미한다.
28. 보장기준통행료수입 : 부록6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29. 보장환차손 :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과도한 환차손의 50%상당액을 말한다.
30. 본 사업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총연장 80.96km의 천안-논산 간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한다.
31. 본 사업부지 :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서 설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32. 본 사업 수입 : 본 사업 시행에 따른 통행료 수입과 부속시설사업 수입 및 기타 수입을 의미한다.

33. 본 사업시설 : 본 도로와 부대시설을 의미한다.
34. 본 협약 :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35. 부대사업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1조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36. 부대시설 : 본 도로에 설치되는 부속시설 및 영업소,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및 광통신관로 등 본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37. 부대시설 공사비 : 본 도로의 부대시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한다.
38. 부속시설 : 본 도로 구간내 휴게소, 주유소 등 도로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서 본 도로의 운영 및 그 기능발휘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보조기능시설을 의미하며, 무상사용기간내에 본 협약당사자들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그 개발의 타당성과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본 협약 당사자가 본 사업의 부속시설사업으로서 적정하다고 합의한 경우를 의미한다.
39. 부속시설사업 수입 : 사업시행자가 부속시설의 운영, 임대 등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의미한다.
40. 분기 :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31일 또는 4월1일부터 6월30일 또는 7월1일부터 9월30일 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1. 불가항력 : 협약당사자들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또는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을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 입증청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채우야고와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51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다.
42.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96. 5. 27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을 포함한다.
43. 사업기간 :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무상사용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4. 사업연도 : 사업기간중의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운영종료연도의 경우는 당해연도 1월1일부터 실제 운영이 종료하는 날까지를 의미한다.

45. 사업수익률 :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상의 수익률 및 사용료조정을 위한 함수관계식에서 적용되는 사업의 실질수익률(IRR)을 의미한다.
46.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인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를 의미하며, 그 적법한 승계인을 포함한다.
47. 소비자물가변동율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당해 기간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말한다. 소비자물가변동율이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48. 시공자 :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9.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 대한민국 법률 제5969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50. 시설사업기본계획 :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430호(1995. 12. 30)에 의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51.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1997. 11.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52. 운영개시일 : 제34조에 규정한 날을 말한다.
53. 위험물 :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한다.
54. 유물 : 대한민국 법률 제6133호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보호법상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55.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고안하고 원형의 교통과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상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56. 잉여수익금 : 실제통행료수입과 환수기준통행료수입과의 차액에서 통 차액으로부터 가인하는 제세공과금 등의 비용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의미한다.
57. 자금차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58. 자금차입계약(들) :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대주관 등이 체결한 계약(들)을 말한다.

59. 점유사용권 : 부지의 점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 및 제3조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 활동 또는 목적을 위하여 부지를 이용하고 점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60. 정부 : 본 협약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61. 제반공급시설 : 본 도로 구간에 병행하여 설치될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송유관 등 제반공급(유틸리티) 시설을 말한다.
62. 세세공과금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의미한다.
63. 준공전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 제5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본 도로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도로의 사용을 위해 인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64. 총민간사업비 :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65.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66. 총선순위채무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에 투입한 타인자본(투자적격통금 이상으로 발행된 사회간접자본채권 포함)으로서,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대주단 등에게 상환하여야 하는 총채무원리금(조기상환수수료 포함)을 의미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본 협약에 따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일 또는 채상환구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정한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67. 최초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송차이율에 적용할 통행료를 의미한다.
68. 추징통행료수입 : 부록6에 명시된 특정 사업연도의 본 사업 통행료수입을 의미한다.
69.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도로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할 민간투자사업의 사용료로서의 통행료를 의미한다.
70.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의미한다.
71. 한국도로공사 : 대한민국 법률 제5361호 한국도로공사법(개정법률 포함)에 의하여 설립, 존속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72. 환수기준통행료수입 : 부록6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의 추징통행료수

위의 110%를 말한다.

73. 환수환차익 : 사업시행자가 얻은 과도한 환차익의 50%상당액을 의미한다.

74. 해지시지급금 : 제62조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5. 협약당사자 : 정부와 사업시행자를 의미한다.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3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정부는 민간투자법 등 관련규정과 본 협약에 따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가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지정, 승인, 설정 및 부여한다.

1.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도로 및 그 유지, 보수, 관리, 운영을 위한 시설과 부속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제1호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본 사업부지의 무상사용
3. 제1호에 따라 건설된 본 도로 및 부대시설의 민간투자법에 따른 무상사용
4. 제1호에 의하여 건설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동행로유지관리 및 징수
5. 본 사업 구간내의 기타 경미한 수익사업
6. 부속시설사업 및 기타 본 협약으로 정한 사업의 시행
7. 부대사업

제 4 조 무상사용기간

- ①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기간과 동일하며, 제3조 제3호에 의한 무상사용기간은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으로서 동 기간동안 관리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준공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조기준공확인 또는 준공선 사용인가를 거쳐 확정된 운영개시일로부터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전체 공사완공예정일(본 협약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은 무상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은 위 공사완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당해 기간 중 동행료징수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 후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 5 조 사업시설의 귀속

본 사업에 의한 도로 및 그 부대시설의 소유권은 관리운영권 설정과 동시에 정부에 귀속되며,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무상사용권 및 관리운영권을 정부에 이양한다.

제 6 조 위험부담 및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천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다.
1. 공사기간 중 본 도로의 파괴시의 복구비 등을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
 2. 본 도로의 준공 지원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예상수익의 상실 및 간접비용을 보상하는 예정이익상실보험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일정기간동안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험에 가입한다.
1. 완성보복공사물보험
 2. 영업 배상책임보험
 3. 운영기간 중 본 도로를 운영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발생하는 수익의 손실 및 간접비용을 보상하는 기업휴지(Business Interruption) 보험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및 권한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

히 이행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리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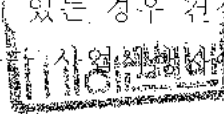
- ② 본 협약 및 관련 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는 사업기간동안 제3조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제 3 장 실 시 절 차

제 8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97. 4. 3. 체결된 협약(이하, “구협약”이라 한다)을 대체한다. 다만, 본 협약체결인 현재 구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 조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그 승인여부 에 서면 통보한다.

제 10 조 행정절차 추진

본 사업시설을 위한 고속도로 노선지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환경영향평가협의, 도로구역결정 고시, 지표조사 등 필요한 행정절차는 정부에서 추진하며, 본 사업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와 문화재발굴조사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고 정부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장 사 업 비

제 11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2와 같이 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14,386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국보보조금 금4,187억원을 제외한 금10,199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제 12 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제2항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경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본 협약에 규정된 사유나 방식 이외에 총사업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등 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감되거나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단, “본 사업계획의 변경”이라 함은 노선변경, IC 또는 JCT 형식·위치의 변경과 주요 구조물인 터널, 교량 중 당해 구조물 공사량의 10%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및 기타 구조물 중 용벽, 통로암거, 방음벽의 경우 현장 여건상 당해 구조물을 신설 또는 삭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사관련법령, 표준시방시, 전문시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공사에 변경에 따른 감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4. 불가항력 사유 기타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공사량의 증가 또는 신규비목이 발생하는 경우

③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세제·공과금의 증·감 또는 기타 정부의 정책사유로 인한 건설기간연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총사업비 변경을 한다.

- ④ 총사업비의 변경은 실시계획 승인서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고, 변경사업비 확정기준일은 2000. 1. 1일로 하며, 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한다.
- ⑤ 본조에 따른 총사업비변경은 원1회를 원칙으로 하되, 총사업비 변경의 규모를 고려하여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필요한 경우 수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산출근거를 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가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을 따른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실제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록4에 명시되고 실시계획 승인서 확정되는 국고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부는 조정된 국고보조금을 제53조 및 부록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동행료 또는 무상사용기간의 조정으로 해당사유에 해소가능한지를 병행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동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⑧ 총사업비의 변경이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본 협약 제51조가 정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 ⑨ 정부의 요구 등 정부의 행위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다음 빈 국고보조금 지급시 이를 감안하여 지급하거나 최초동행료 조정시 반영하기로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제 5 장 공사에 관한 사항

제 13 조 부지에 대한 점유사용권

정부는 사업기간동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정부 또는 관계관청에 어떠한 지급금 또는 기타 부담금도 지급함이 없이 본 사업부지에 대한 배타적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사업시행자가 본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14 조 위험물

- ① 협약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물이 부지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는 이를 정부에 즉시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협약당사자는 관련 인허가 및 법률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제거 또는 중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부 또는 관계관청의 부지출입을 허가하고 정부 또는 관계관청의 지시사항을 수행하고 편의를 제공한다.
- ③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위험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공사기간 연장 및 본 협약 제8장에 상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5 조 지상 및 지하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상 및 지하 지장물로서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해당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 및 지하시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이의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 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공사기간 중 정부 또는 관계관청의 필요에 의하여 지상 및 지하지장물의 이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시공자의 합리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비용의 처리방법 및 공사기간의 연장 등은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6 조 보상업무등

- ① 본 사업부지의 매수업무와 이와 관련한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정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 ② 정부의 보상업무나 지장물처리지연 또는 유불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등 비용에 대하여는 본 협약 제8장에 상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17 조 공사비

공사비는 정부에서 시행한 실시설계내역서를 근간으로 하여 산출하며, 부록2에

명시 된 바와 같이 2000년1월1일 분변가격 기준 금13,085원으로 하며, 본선영업소, 환기탑, 휴게소 공사비는 토목공사비에 합산하여 계상하고 190억원 범위내에서 사후 정산기로 하고, 부대시설 공사비는 일단 893억원으로 하되 실시설계 결과환토대로 확정토록 하며, 설계 완료 후 부득이한 경우 부대시설 공사비 총액의 5% 범위내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

제 18 조 공사기간

본 도로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단, 정부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증책임은 사업시행자가 지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사전 협의한다.

제 19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감리전문회사의 확인을 받은 착공계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최초 공사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본 도로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0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공사에 대하여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매 분기별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공사추진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사일정에 따라 본 도로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도로 공사의 전체 공정과 당해연도 예정공정표 및 당해연도 시공분이 표시된 노선도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상 제시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6개월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누계공정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반화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고 심상적인 공정추진이 되도록 노력한다.

제 21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당초 총사업비 중 제세공과금, 영업준비금, 이윤 및 부대비용 보험료, 대출관리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최종 확정금액으로 하여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 납부한다.
- ② 정부의 귀책사유,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해지되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보증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이행지체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도로의 완공기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완공기일까지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 경우 1일당 지체상금으로 총사업비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집행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0.1%를 지체상금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누적 지체상금의 총액은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제18조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지체상금은 연장된 공사기간 이후부터 산정한다.
- ③ 누적지체상금의 총액이 사업이행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는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이행보증금을 귀속시킬 수 있다.

제 23 조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출자자들을 시공자로 하여 본 도로 및 부대시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계약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가 본 도로 및 부대시설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의 준수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감리자는 위 하수급인이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의 시공과정에서 노임채불이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중 채불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 24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실적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관리자로부터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지체없이 사업시행자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25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의 도로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 등과 관련된 민원은 정부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단, 정부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민간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② 본 사업시설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제 26 조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조치를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기간중 시설물안전과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중민안전진단 및 긴급유지보수를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27 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본 도로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관리자의 지정 및 계약
2. 제12조에 따른 설계변경 승인
3.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의 승인
4. 기타 본 협약 내용상 위임된 사항

제 28 조 공사책임관리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본 도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민간투자법에 따른 책임감리업무 수행하도록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관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관리실적에 따라 매분기별 관리비를 지급한다.
- ④ 관리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에 대한 정기보고와 기성검사, 준공검사, 설계변경, 품질 및 안전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사와 그 하도급자로 하여금 공사책임관리와 관련된 본 협약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부속시설사업

- ① 부속시설사업은 부록8과 같으며, 그 부속시설에 따른 인·허가, 용지대수, 보상업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고, 부속시설의 진출입설계 및 건축공사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하에 시행토록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업계획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건설기간 중 존상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30 조 부대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통행료의 인하 및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대사업 추진시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 ② 사업시행자 지정시 결정된 부대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나 사업시행시의 실제수입이 당초 제시한 예상 수입에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예상수입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31 조 부분 준공

- ① 국가성생력 제고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본 도로의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도로의 전체 준공전이라도 본 도로의 완공부분에 대하여 부분 준공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부분 준공에 따른 준공검사, 관리운영권 등에 대해서는 제33조(준공검사)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부분 준공에 따른 운영기간은 사업시행자의 무상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통행료와 통행료수입의 처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2 조 제반공급시설의 설치

본 도로와 병행하여 설치한 제반공급시설(전기, 통신, 가스, 송수, 송유관 등)이 있는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 및 사업시행자는 상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및 수익방법 등에 관해 사전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와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을 정하기로 한다.

제 33 조 준공검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예비준공검사를 받아 본 사업(도로)의 완공 3개월전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예비준공확인 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성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등 미비사항을 완결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완공후 감리사가 확인한 본 도로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식 준공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

을 위임받은 자는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준공확인필증을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다만, 준공확인필증 교부이전에 본 도로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준공하는 경우에도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에 따라 (조기)준공확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본 사업에 대한 (조기)준공확인을 실시하고 (조기)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준공확인필증 교부이전에 본 도로의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인가를 하여야 한다.

⑤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거나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후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운영개시일 이전에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관리운영권의 설정 및 운영개시일, 최초통행료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기준공의 경우에는 제4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도로의 건설과 관련한 건설지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6 장 관 리 운 영 에 관 한 사 항

제 34 조 운영개시일

운영개시일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선정받아 실제로 전구간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날로 한다. 다만,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아 본 도로를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본 도로를 운영하여 통행료징수를 개시한 날로 한다.

제 35 조 유지관리 및 시설물의 품질확보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전 구간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도록 본 도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3개월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주요시설물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동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 준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거나,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중의 위협을 발생시킬 안전상 하자가 발생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이행을 확인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관리를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6 조 시설투자 완료기한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 신청 전까지 도로관리사무소, 요금징수시설 및 교통관리 체계운영시설 등 본 도로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 37 조 교통관리 체계의 운영

- ①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입체적 교통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정부는 순찰차량이나 헬리콥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 도로의 교통관리체계를 전국고속도로와 연계시킬 수 있으며, 이 연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목적, 이용에 따른 편익,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하여 조정하거나 추가 협약 토록 한다.

제 38 조 이용차량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도의 3월31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의 교통현황 및 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교통량현황 및 본 사업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신정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 39 조 운영비용

- ① 법인세를 제외한 운영비용은 2000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5,376억원으로 한다.
- ② 부록7에 명시된 때 사업연도의 운영비용은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소비자불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한 경우 통행료의 인상, 부상사용기간의 연장 또는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 본 도로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및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부록7.에서 정한 각 사업연도별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운영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 정부 또는 관계관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운영비용이 발생하고 정부가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승인한 경우
 3.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 ④ 정부는 민간투자법령 및 본 협약으로 정한 운영비용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가 경영효율 등으로 운영비용을 절감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사용료의 인하, 부상사용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 40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후실질수익률을 의미하며, 9.24%로 한다.

제 41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부상사용기간 동안 본 도로구간을 통행하는 차량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②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통행료를 원활히 징수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③ 본 도로와 연계된 도로구간과 통행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연계도로의 관리운영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료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다.

제 42 조 통행료

차종별 통행료는 부록5와 같다.

제 43 조 최초통행료

- ① 본 협약 체결일 현재 최초통행료는 부록5에 정한 바와 같이 2000. 1. 1. 불변가액 기준 금5,834원(1종 기준, 72원/km×80.96km,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 ②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최초통행료는 제1항의 통행료에 운영개시일 전까지의 소비자불가변동율을 누적적용(연간 단위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1년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동안의 변동율을 적용한다)하여 결정하되,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확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통행방법 및 통행료를
 2. 통행료의 산출기준자료
 3. 통행료의 징수방법
 4.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율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통행료수준
 6.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통행료(최초통행료 포함)는 본 도로의 총 연장 및 통행료 징수상의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징수가 용이한 기준단위(예:100원)로 절상(삭)하여 결정한다. 다만, 기준단위를 낮추는 과정에서 소비자불가변동율보다 통행료가 높게 또는 낮게 결정되는 경우 그 증감분을 익년도 또는 차기 통행료 조정시 반영한다.
- ④ 운영개시시점에서 적용될 실제 최초통행료가 상부의 요구에 의거 본조에서 산

정된 최초통행료보다 낮게 책정되어 발생하는 무상사용기간 동안의 운영수입 감소분에 대해서는 재정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행료 인상 및 무상사용기간 연장을 결합 할 수 있다.

제 44 조 통행료의 정기적 조정

- ① 통행료는 운영기간중 원칙적으로 연1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배 사업연도에 대한 연도별 통행료를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율 범위 내에서 고속도로 요금수준, 대체도로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당해연도 이전에 본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이 없었거나 일부 조정만 있었던 경우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변동율(일부 조정의 경우는 미반영 부분)을 누적적으로 합제한 범위내에서 통행료를 조정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한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도 3월 15일 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행료를 신고한다.
- ④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이하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통행료는 추정통행료수입에 차이가 없는 범위내에서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결정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매년 4월 1일부터 본 조에 의하여 조정된 통행료를 징수한다.

제 45 조 통행료의 부정기적 조정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시 본 협약에 정한 원칙과 방식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한다.



 1.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한 ~~채권자는~~ 채권자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 또는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2. 직전년도 실제통행료수입이 보장 기준통행료 수입에 미달된 경우
 3. 건설기간중 이루어진 외화자위금에 대해 과도한 환차손 발생시 과도한 환차손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4.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행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의한 통행료조정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입증자료

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정부와 사업시행자는 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협의 결정하기로 한다.

- ④ 제3항의 협의기간동안 통행료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협의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기관에 통행료를 산정하도록 요청하며,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통행료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3의 전문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제3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통행료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협약당사자 쌍방에 문서로 통보토록 하며, 협약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46 조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 ① 본 협약 체결시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6과 같다.
- ② 정부는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에 따라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기간동안 매 사업연도의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통행료수입에 미달하거나,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보장하거나 그 초과분을 환수한다.
-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수입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이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재정지원과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병행 검토한다. 단, 통행료 및 무상사용기간 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다.
1. 통행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 본 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본 도로와 경쟁관계에 있는 도로 및 본 도로와 유사한 위치 및 운영조건을 가진 여타 도로의 통행료 수준을 감안하되, 본 협약 체결 당시 본 도로가 가지는 경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하며, 통행료 인상으로 인해 본 도로의 통행료수입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2.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는 반드시 사업시행자와 무상사용기간 연장방안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 ④ 정부의 요구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 또는 조정된 통행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감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통행료수입 감소분(감면이 없었던면 징수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통행료수입과 감면후 실제로 징수된 통행료수입의 차이)을 지급한다.
- ⑤ 환수기준통행료수입을 초과하는 통행료수입은 다음 순서에 의거 처리한다.
1. 본 협약에 의거 정부가 재정지원하여야 할 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에 상당

2. 통행료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유지 또는 인하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행료 인하 또는 무상사용기간 단축

3. 국고환수

⑥ 통행료수입보전을 위한 보조금에 부가되는 법인세부담분이 발생하더라도 동 부담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⑦ 통행료수입보장 및 환수를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완료된 통행료수입현황 등에 관한 자료(통행료수입보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역 포함)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 초과환차손익의 처리

①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기간동안 어느 특정 사업연도 중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환차손을 입는 경우, 과도한 환차손 중 보장환차손에 대하여는 제46조(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환차손보전을 위한 보조금에 부가되는 법인세부담분이 발생하더라도 동 부담분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은 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기간동안 어느 특정 사업연도 중 사업시행자가 과도한 환차익을 얻는 경우, 과도한 환차익 중 환수 환차익에 대하여는 제46조(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수)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과도한 환차손익은 매 사업연도 단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그 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초과 환차손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46조 제7항에 의한 자료제출시 환차손익의 발생내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8 장 위험의 배분

제 48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의 배분 및 처리는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제51조에 정한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정부와 사업시행자간 별도협의를 통하여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46조 제2항에 따른 보장기준통행료 수입의 보장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사유 발생이 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4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의 발생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정한 사업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의 부설시공이 발생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필요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여 자금차입계약(들)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관투자법 제46조에 따른 정부지침을 위반한 경우
-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50 조 정부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정된다.
1. 정부의 요구(본 사업계획의 변경, 민원 등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여 정부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로 인하여 공사량이 증가되거나 신규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공사관련법령, 표준사방서, 전문사방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민간투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또는 본 사업시행권에 대한 불수
 4. 정부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등의 처리지원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5.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통행료의 감면요구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조성, 결정된 통행료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되는 경우
 6.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에 정한 정부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상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건설기간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 또는 운영기간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51 조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 및 그 처리

- ①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사해~~ 자연재해 및 위험물이나 유물의 발견
 2. 전국적 또는 사회산업전반의 파업
 3. 정부정책, 경제환경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조 제2항에서 상한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
-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기타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 ③ 공사기간중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 가. 비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80%의 한도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 나. 정치적 사유로 인한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직·간접비용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본 도로의 통행료 조정 또는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보전하되 사업시행자가 부고한 보험이나 책임있는 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손실비용은 제외된다.
- ④ 운영기간중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조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행료수입 보장기간 여부에 관계없이 제46조 통행료수입보장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약당사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의 전력이 있어 정부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지우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 조정을 통하여 정부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행

료 및 부상사용기간의 조정은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 ⑥ 정부는, 정부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정융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단기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체협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9 장 정부지원사항

제 52 조 총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 ① 정부는 부록4에 명시된 일자와 방식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중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교부한다.
- ② 국고보조금은 공정율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며, 특정연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은 당해연도말까지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공정율이 계획된 공정율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연도예산의 범위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가 특정 분기의 계획된 공정율에 따른 공사수행을 하였음을 전제로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급이 차분기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부는 차분기내에 제53조 제3항에 정한 이자(선용등급 A+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이후주채)를 지급하기로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제20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부진공정반회 대책에 따라 부진공정을 반회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당해연도에 배정된 국고보조금중 계획된 공정율에 미달된 공정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을 미달된 공정의 만회시까지 지급연기할 수 있다.

제 53 조 재정지원

- ①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조에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정지원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정한 재정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재정지원을 요청하면, 정부는 재정지원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재정지원 소요금액을 확정하며, 동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재정지원 금액을 지원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 차기년도 2월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공사기간중 정부의 요구 등으로 인한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국고보조금 지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당해사유 및 자금계획을 포함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동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는 지원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행여부 및 방침을 결정하고 동 방침에 따라 예산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정지원을 실행하기로 한다.
- ③ 제46조 및 제47조에 의한 재정지원에 있어 재정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체되는 경우 정부는 지원 요청일이 속한 연도의 차기년도부터 한국증권선산에서 고시하는 신용등급 A- 인 3년만기 무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정부방침에 따라 재정지원하기로 결정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동 지급시기 경과일 다음날로부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 ⑤ 정부는 본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당해 재정지원 금액에 대한 법인세 기타 이에 부가되는 주민세 등이 발생하는 경우 동 세금액을 제외한 재정지원금액이 당해 재정지원사유액 해소에 필요한 실질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동 세금액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 교부시 함께 지원하거나 또는 장기대부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행료수입 보장 및 환차손보전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본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54 조 정부의 비재정적 지원

- ① 정부는 본 사업의 진설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본 협약 체결 이후에 관계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률이 개정되거나 새로 제정된 법률이 발효된 후에도 동 법률들이 시행되기 이전과 동일한 경제적 조건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이자, 배당금, 사본 및 위금의 대외송금액이 자유롭게 외국환으로 환전되고 국외의 은행계좌로 송금될 수 있게 한다.
-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도로 및 부대시설의 공사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이를

적극 지원한다.

- ④ 정부는 본 도로 및 부대시설의 건설과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수입허가 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⑤ 정부는 본 사업 완공 예정인 2002년말까지 정부고속도로중 천안IC에서 본 사업 구간의 시점인 천안JCT까지 도로를 6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한다.
- ⑥ 정부는 사업시행자와 대주단간의 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차입계약(제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 ⑦ 정부는 사업시설을 무단으로 통과하는 차량 등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 등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55 조 대체사업으로 인한 보상

정부는 사업기간 중 본 도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를 초래하는 신규노선의 신설(본 협약 체결시 기계획된 경우 제외)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 또한 기존도로의 확장이나 본 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본 도로 확장이 부득이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별도 협의하기로 한다.

제 10 장 불가항력

제 56 조 불가항력사유

본 협약에 있어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제 57 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서면 통지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의 합법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분쟁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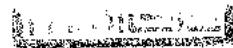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통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68조 내지 제72조에 따라 해결한다.
- ④ 10일 이내에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정부 및 사업시행사 모두 청구의 합법성을 인정할 것으로 본다.
- ⑤ 청구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성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58 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사업기간동안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기간 및 무상사용기간을 관련 불가항력 사유의 치유에 소요되는 기간만큼 연장한다. 불가항력 사유의 결과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한 본 협약상의 의무준수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5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 해지되지 않는 한,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무상사용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하며 정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말소한다.
- ② 본 협약이 무상사용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일 3년, 1년 및 6개월전에 각 1회씩 건설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무상사용기간 만료일에 본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기간 만료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정부의 판단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의 만료 이후에 본 사업시설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사업시행자에게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건은 그 당시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60 조 협약의 중도해지

① 정부에 의한 중도해지 - 제49조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중도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사유의 발생시 사업시행자로부터 통행료나 무상사용기간의 조정,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정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정부가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기간중에 본 도로와 유사한 목적을 갖는 도로 등이 개설되어 본 도로를 사용하는 교통량의 현격한 변동이 있어 제55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계속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제50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또는 운영이 6개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1.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유물과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구간 이외의 구간에 대해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구간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운

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한 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금융완결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들)이 중도해지 되고 60일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동 사유가 정부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정부가 각 중도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당사자에게 중도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분해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⑤ 협약당사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중도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해지사유 발생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동기간내에 당해 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지연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제 61 조 배수청구권

① 본 협약 제60조에 정한 사유가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정한 배수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별도로 배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배수청구권에 따른 배수가액은 가액 **민간투자법**에 정한 배수청구권을 포함한 잔여운영기간 기대수익(단,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을 사업수익물로 현재가치화한 금액으로 한다. 잔여기간 기대수익의 현재가치는 본 협약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의미한다.

제 62 조 해지시 지급금

①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종전순위재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관리운영권에 저장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시당권자, 이하 동일)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 적정가치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경우 사업이행보충금은 정관에 귀속된다.)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재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정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④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 중 큰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1. 공사기간중인 경우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2. 운영기간중인 경우 부록8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현금흐름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
- ⑤ 본조에 정한 본 사업시설물의 적정가치 **한도**점까지 사업시행자가 투입한 총사업비를 해지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투입시점부터 중도해지시까지 실제 소비자불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후, 동 환산액에 사업수익률을 해당기간만큼 적용하여 산출한 연도별 총사업비의 합계액을 받는다.
- ⑥ 중도해지사유가 배수청구사유에 해당한 경우에는 본조에 따라 산정된 해지시 지급금과 제61조에 정한 배수가중 한 금액을 지급한다.

제 63 조 해지시 지급금의 조정 및 결정

- ① 본 협약에 따라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 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2.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부를 정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정부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주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적정가치의 산정에 있어서 기부입된 국고보조금은 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 ② 본 협약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에 대하여 협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협약당사자는 그들이 보유하는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 산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의 산정을 의뢰받은 후 가능한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협약당사자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금액이 정하여지면 예산을 확보하여 해당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적정가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③ 협약당사자간에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의하여 인정한다.
- ④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 인정통보일로부터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중도해지일 또는 매수청구인정통보일 직전 1개월간 한국증권전산에서 공시하는 신용등급 A+인 3년만기 부보증회사채 평균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다만, 해지시지급금 또는 매수가중 사업시행자가 대주단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상환시 적용되는 금리를 적용하되, 사업시행자의 본협약에서 정한 목적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한다.
- ⑤ 본 협약에 따라 정부가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 또는 매수가는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제한 또는 조건 없이, 세금 또는 세금을 이유로 하거나 상계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공제나 원천징수 없이 지급된다.
- ⑥ 정부는 법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상 사업시행자

로부터 회수할 수 있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단, 해지시지급금 또는 배수가 총선순위채무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

제 64 조 협약중도 해지시의 효과

- ①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은 즉시 정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부상사용기간도 종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정부가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정부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용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사용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관리운영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가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고, 본 사업시설을 정부에 이전한다.

제 65 조 종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완만한 이행을 정부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 ② 본 협약의 종료 또는 중도해지는 종료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양도 및 대체사업자

제 66 조 양도

-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정부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 ② 본 사업의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등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대주단에게 본 협약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구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추천

- ① 제60조 제1항에 따라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협약의 중도해지를 통지한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대주단(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 사업자를 정부에 추천할 수 있다.
- ② 대체사업자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정부는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사업자 지명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정부는 대체사업자가 본 협약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유지, 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금조달, 기술 능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지원을 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천한 대체사업자를 기각할 수 있다.
- ③ 대체사업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대체일 이후 본 협약에서 사업시행자를 언급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를 언급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경우, 정부 및 대체사업자는 그 대체사업자가 지정일에 존재했던 협약중도해지사유 또는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 불이행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에 대하여 합의한다.
- ④ 정부와 대체사업자는 본조의 규정을 실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모든 통지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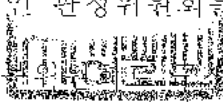
제 68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우선적으로 판정위원회에서 해결하며, 판정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된다.

제 69 조 분쟁금액

- ①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지급이 명시된 금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을 보류할 권리를 갖는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지급이 청구된 금액에 대해 다투는 경우, 당사인은 당해 청구 통지의 수취인에 의한 수령 후 7일 이내에 제70조의 재무위원회에 회부된다.
- ② 분쟁의 해결시까지 보류된 모든 금원 중 이의가 있는 부분은 당해 분쟁이 수취인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당해 금원이 그러한 금원에 대한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자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제53조 제3항에 규정된 금리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어야 한다.

제 70 조 판정위원회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3인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판정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판정위원회는 기술위원회와  새부위원회로 되며, 기술위원회는 설계, 공사 및 운영을 포함하여 본 사업에 관한 기술문제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이를 결정하며 그러한 분쟁과 관련되거나 또는 이에 따른 금전적 청구 또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새부위원회는 기술문제 이외의 사항과 관련된 분쟁 및 그에 따른 금전적 청구사항을 결정한다.
- ③ 본 협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또는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심 또는 관련분쟁의 발생에 관한 통지 이후 20일 이내에 그 해결을 위하여 분쟁 사항을 적절한 판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상대방 협약당사자에게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판정위원회 및 하급 위원회의 위원들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임된다.

1. 판정위원회는 분쟁발생을 통지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위원회 또는 제부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하거나 두 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총3인의 판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분쟁발생통지 이후 2개월 이내에 각 협약당사자가 상대방 협약당사자에 대해 판정위원 선정대상자 각 2인을 지명한다. 상대방 협약당사자는 지명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그러한 2인 중 1인을 해당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한다.
 3.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의 방식으로 선정된 2인의 위원의 합의로 그들이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공동 선정한다.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일방 협약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이를 선정한다.
 4. 각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및 비용은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다.
- ④ 각 협약당사자는 회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정위원회에 인도할 수 있으며, 판정위원회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1. 분쟁, 분쟁과 관련된 사실 및 결정하여야 할 사항의 성격 및 배경
 2. 청구자가 구하는 구제수단 명세
 3. 서신, 보고서 및 기타 협약당사자가 회부하고자 하거나 또는 의존하는 서류의 사본
- ⑤ 각 판정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일반 또는 임시의 절차 규칙을 정한다.
- ⑥ 제1항의 일반 규정에 추가하여, 각 판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문회를 개최하거나 또는 달리 모두 증거를 제출할지의 여부 또는 위원회가 서실표본을 제출할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정한다.
 2. 위원장은 증인의 증언을 시면 형식으로 서명하며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또는 그 사본)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감리사의 대표로 하여금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응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가로 하여금 분석 또는 현장에서의 실험을 실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5. 판정위원회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위원장은 판정위원회의 기속 이전에 청문회 일시 및 장소와 청문회 절차 규칙을 정하며, 협약당사자가 참석하도록 한

나. 각 협약당사자는 법률, 기술 또는 금융자본원을 동원하여 판정위원회에 출석하거나 또는 이들로 하여금 판정위원회에서 그들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 ⑦ 판정위원회는 회부일로부터 30일 이내 회부된 사항을 결정하여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결정사유와 함께 통지한다. 동 30일의 기간은 위원장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 연장사유를 기재하여 추가 30일간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 ⑧ 모든 결정에는 그 결정이 판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만장일치가 아닌 경우, 반대의견도 기재하여야 한다.
- ⑨ 판정위원회의 만장일치 결정은 결정과정에 있어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을 위한 법원의 신고를 요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증서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권한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⑩ 판정위원회의 결정 중 만장일치에 의하지 않는 결정 또는 만장일치의 결정중 결정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정은 당해 분쟁이 판정위원회의 당해 판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제71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되거나 또는 법원에 소송제기 될 때까지는 최종적이며 협약당사자를 구속한다.
- ⑪ 협약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라 본 협약에 종결되거나 달리 종결해지되는 경우 판정위원회는 자동적으로 해산된다.

제 71 조 중 재

-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판정위원회의 만장일치 판정대상이거나 제70조 제10항에 따라 판정위원회의 당해 판정 통지 후 30일 이내에 중재에 회부되지 아니하는)은 중재제원소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도록 협약당사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 ② 중재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대한상사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 ③ 협약당사자는 중재부에게 판정위원회에 제시된 증거나 분쟁사유를 제한없이 없이 제출할 수 있다.
- ④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

다. 단, 협약당사자가 상호 악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 ⑤ 중재인의 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협약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으며, 집행을 위한 법원의 선고를 요하지 않는 집행 가능한 중재를 구성한다. 이에 대하여 협약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72 조 합의판할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판할은 실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73 조 해 석

본협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에서,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와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될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된다.
-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협약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 74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 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본 협약
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3. 시설사업기본계획

제 75 조 자금차입 등과 정부의 협조

① 정부는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등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정부는 대주단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근거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설정해 주기로 하고 등록된 근거당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거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정부는 사업기간중 대주단의 대출여부 및 대출 조건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사유와 변경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리은행에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차입계약(들)의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주단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1. 공사기간
2. 총행로 산정 및 조정기준
3. 총사업비에 관한 사항
4. 사업수익률
5. 출자자, 출자자별 출자금액 및 사업시행자의 자본증자의 경우 그 납입시기와 납입금액

6. 본 협약의 중도해지

7. 사업시행자의 변경

- ⑤ 정부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이 사전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제 76 조 기타 정비한 수익성사업

사업시행자는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부 승인을 받아 무상사용기간 중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여 기타 정비한 수익성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은 다음연도 통행료 결정에 반영한다.

제 77 조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변경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르며, 본 협약 내용중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상이한 사항은 본 협약내용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78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이후에 확정 또는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없는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사항에 있어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상의 확보 및 본 협약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세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79 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단, 사업시행자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제76조에 규정된 기타 경매한 수익성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0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제 81 조 정부의 협약준수의무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정부는 본 협약이 사업상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하며,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정부의 의무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있다.

제 82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에서의 또는 본 협약상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3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묵적인 사면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각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채

결이 이와 같이 해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84 조 비밀유지

-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3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고위하며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편정위원회,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 ③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제 85 조 서면 통지

- ①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통지는 상대방의 수취확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이루어진다.
- ② 각 협약당사자에 대한 문서의 통지나 송달은 아래의 주소로 이루어진다.

1. 정부에 대한 통지 : 건설교통부장관

주소 :

참조 :

전화 :

팩스 :

E-Mail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천안-논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889-2

참조 :

전화 : 041 - 576 1234

팩스 : 041 - 576 -1232

E-mail : chunan12@chollian.net

- ③ 협약당사자는 주소의 변경을 상대방 당사자에 통지하며 이러한 변경 통지는 통지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 86 조 언 어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외자조달 필요성에 의해 영문본 작성시 정부는 동 영문본이 한글본의 효력과 동일함을 확인한다.

제 87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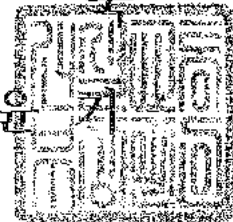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당사자는 컷머리에 기재한 날짜에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며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00년 12월 14 일

대한민국

건설교통부 장관 김 윤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주식회사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889-2

대표이사 문정기

